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도시건설위원회(건설관리과)

의안번호	55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2.11.23.)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이 성 호

##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연장근거 마련

(안 제13조제9항)

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0항)

다.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14조제3·4·5항)

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행강제금·과태료 개정사항 반영(별표 1, 6)

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6의 제2호나목)

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

(별지 제1·3·4·5·6·9·12·13·14·15호 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2. 9. 29.(목) ~ 10. 19.(수)

###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및 재심의사항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조례안 제13조 제9항 및 제10항은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및 연장과 재심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 조례안 제14조제3항~제5항까지는 현 조례 제13조제4항~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사항을 삭제 함

- 조례안 [별표 6]의 제2호 나목은 옥외광고물 결합에 의한 손해를 입은자에게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sup>1)</sup>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별표8]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표준안 따라 금회 조례안 개정시 신설된 사항 임
- 조례안 별지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된 사항 임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5]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8]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조례안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하향 조정 하였고.
  - 조례안[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1회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에 걸쳐 가중 부과토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이 2021.12.14.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 2022년 옥외광고물 관련 개정된 타구 조례 형평성에 맞춰 우리구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하향 수정이 필요 함.

---

1)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2년 개정된 자치법규 서울시 5개구 과태료 분석 비교

자치구명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노원구	법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유 <sup>2)</sup> 을 이유하지 않는 경우	25만원	45만원	100만원
강북구		25만원	45만원	100만원
강남구		25만원	45만원	100만원
관악구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은평구		29만원	49만원	100만원
성북구 개정안		29만원	49만원	99만원

5. 조례 개정안 수정

○ 대 상 :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개정안			수정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유하지 않는 경우	29만원	49만원	99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수정안은 조례 개정안 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과 같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과 「서울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및 2022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표준안에 의거 검토된 사항으로써 타당 하다고 사료 됨

단, 2022년 옥외광고물 관련 개정된 서울시 타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상으로써 수정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 검토가 필요 함.

- 2) 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